

여신전문금융회사등감독규정

제 정 1998. 4. 1

개 정 1998. 6. 1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·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(이하 “감독기구설치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·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감독위원회(이하 “금감위”라 한다)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·시행규칙과 감독기구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신용카드의 발급 및 비밀보장)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신청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설대여 관리대장) 삭 제 <98.6.12>

제5조(금융거래자의 보호)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약관 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약관의 명시·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등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산건전성 분류 등)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다음 각호별로 그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.

1. 신용카드업 : 카드대금금(카드론 포함), 대출금, 유가증권, 미수금, 가지금금, 지급보증
2. 시설대여업 : 리스자산, 대출금, 유가증권, 미수금, 가지금금, 지급보증
3. 할부금융업 : 할부금융, 팩토링, 대출금, 미수금, 유가증권, 가지금금, 지급보증
4. 신기술사업금융업 : 대출금, 투자주식(사채포함), 리스자산, 유가증권, 미수금, 가지금금, 지급보증

②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“정상”, “요주의”, “고정”, “회수의문”, “추정손실”의 5단계로 구분하되, 카드대금금은 “요주의”, “고정” 및 “회수의문”분류를, 유

가증권의 경우에는 “고정”분류를, 가지급금(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“요주의” 및 “고정”분류를 제외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건전성 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감사의 직무등)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감사는 매년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하고, 그에 따라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위법·부당한 행위의 징후가 있거나 금융감독원장(이하 “감독원장”이라 한다)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·부당한 행위를 적출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관련자의 문책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
③감사는 제2항의 적출내용 및 그 처리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업무보고서의 제출) ①법 제5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매분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을 경유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업무보고서의 세부내용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경영분석) ①감독원장은 경영분석·평가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경영상태를 분석·평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분석·평가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감사인 지명요구) 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“검사결과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불건전자산(제7조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)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②감독원장은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인의 지명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지명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검사의 위탁)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

제12조(세부사항)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)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이 규정중 감독원장은 이를 신용관리기금이사로장으로 본다.

부 칙 <98. 6. 12>

이 규정은 199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